



<꿈과 사랑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>
전주금암 가정통신문

전주금암초등학교
교무실 : 254-2274
행정실 : 275-6736

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 안내

학부모님께

2020학년도를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드릴 말씀은 [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, 교육부 훈령 제280호]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의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학부모님께서 항상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, 학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.

1. 출결 상황 관리

가. 결석

1) 결석일수의 산정

: 학칙에 의거,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.
(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.)

2) 출석인정 결석

- 가) 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(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)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나)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'학교·시도(교육청)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, 교환학습, 교외체험학습(**뒷면참고**)', 「학교보건법」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'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다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 이수 기간
라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,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
마)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-**경조행사 참가 신청(확인)서 제출**

【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】

구 분	대 상	일 수	비 고
결 혼	• 형제, 자매	1	
입 양	• 본인	20	
사 망	• 부모 및 부모의 부모	5	
	• 부모의 조부모.외조부모	3	
	• 형제.자매 및 그의 배우자		
	• 부모의 형제.자매	1	※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함.

바)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워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(월 1일 결석)

3)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(병결) **[양식 2] 결석계 제출 필요함.**

가) 상습적이지 않은 1~2일의 질병으로 인한 **단기결석**: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

① 결석계 제출+② 담임 확인서

나)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**장기결석**: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

① 결석계+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,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)를 첨부제출

다)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: ① 결석계+② 의사진단서(소견서)

* 민감군 학생의 경우,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.

4) 미인정 결석(결석계 제출 필요 없음)

- 가)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
- 나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
- 다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
- 라) 태만, 가출,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
- 마)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

*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,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

5) 기타 결석(학교장 인정: 공문에 의거 결제)

- 가) 부모, 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- 나)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
2. 교외체험학습 [양식 3, 4] (제출 필요함)

◆ 운영 ◆

- 가.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, 실시 하는 체험학습으로.
그 기간은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.
- 나. 교외체험학습은 관찰, 조사, 수집, 현장 견학, 답사,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,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.
- 다.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, 필요시 반일(4시간)도 운영이 가능하다.
(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)
- 라.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.

◆ 신청 절차 ◆

- 가.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(토·일 및 공휴일 제외)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,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.
 - 나.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.
 - 다.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.
 - 라.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,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.
 - 마.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.
 - 바.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양식 4] 교외체험학습보고서(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서류: 출입국관리증명서 또는 항공티켓 추가 제출)를 제출하고, 담임교사(학교)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.
- 단,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(Unaccompanied Minor)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

*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(미인정 결석 처리)

- 사설학원,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
-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

◆ 학교 홈페이지->알림방->공지사항 및 각 학급 홈페이지에 양식 탑재 ◆

2020. 3. 00.

전주금암초등학교장